

상대방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송의 상대방, 자연이자율 등

■ Question 저희 업체는 물건을 제조한 후 주식회사인 상대방업체에게 납품하였는데 상대방 업체는 대금 1,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파산이나 해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업체는 상대방업체의 공동대표이사 2명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사기죄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 Answer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을 질의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를 공동대표이사 2명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 자연이자율을 약정하지는 않았는데 얼마만큼의 자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 상대방업체의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신용평가 사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그 의뢰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 지급명령신청이 적절한지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현재 상대방업체는 폐업한 상태이므로, 상대방업체의 주소에 대하여 송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송달 불능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송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따라 송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지급명령이 송달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업체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한편 신청업체는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서 신청업체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업체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보다 소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누구를 상대로 소 제기할 것인지

신청업체는 상대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업체를 상대로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업체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공동대표이사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율은 어떠한지

신청업체는 영업으로 제조 및 매매를 하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이며(상법 제54조), 채무자에게 소장 부분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은 연 20%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신청업체는 채무 이행기의 다음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용평가사 의뢰비용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민법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민법 제397조)

우리나라 통설은 채권자가 실손해액이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초과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은 통상손해이고, 초과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위 의뢰비용이 곧바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후자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업체가 신용평가사 의뢰를 예견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